

군산시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4년 11월 17일

전라북도 군산시 훈령 제316호

군산시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안행정부 훈령 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기본지침」, 전라북도 보안업무규정(전라북도 훈령 제1658호)등에 따라 군산시의 정보통신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군산시와 군산시 소속·산하기관(이하 "군산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PC·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치,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3.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PC 등과 스위치·교환기·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통신실·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전자정보) 보관실 등을 말한다.
4. “전자정보”라 함은 각 부서가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
5. “정보통신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이버 안전을 포함한다
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저장·검색·송수신 시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7.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8. “저장매체”라 함은 자기저장장치·광 저장장치·반도체 저장장치 등 자료기록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말한다.
9. “소자(消磁)”라 함은 저장매체에 역자기장을 이용해 매체의 자화값을 “0”으로 만들어 저장자료의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10. “완전포맷”이라 함은 저장매체 전체의 자료저장 위치에 새로운 자료(0 또는 1)를 중복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11. “취약점 점검”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도청 등 각종 위협요소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통신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12.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13. “인터넷PC”라 함은 인터넷망에 접속이 가능한 PC를 말한다.
14. “업무PC”라 함은 업무·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에서 내부 업무망 접속을 위해 사용하는 PC를 말한다.
15. “IP(Internet Protocol)주소”라 함은 정보통신망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주소체계를 말한다.
16. “사용자계정(ID)”이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자료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생성한 영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고유계정을 말한다.

제2장 정보통신보안 기본활동

제4조(책무) 시장은 전자정보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활동방향) ① 시장은 정보통신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보안 정책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2. 정보통신망 보호대책 수립·시행
3.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보안관제
4. 사이버침해사고 대응·복구
5. 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규정 등 제·개정
6. 정보통신보안 지도점검 실시
7. 정보통신보안 교육계획 수립·시행
8. 정보통신보안업무 심사분석 시행
9. 정보통신보안 예산 및 전문 인력 확보
10. 정보통신보안 위규 적발 강화 및 사고조사 처리
11. 그 밖에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통신보안 지도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보안점검 체크리스트”(별표 1) 등을 적극 활용한다.

제6조(정보통신보안담당관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통신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임명 운영하여야 하며, 부서의 원활한 정보통신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장을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으로 임명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속·직책·직급·성명·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등을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군산시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정보통신보안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군산시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담당관이 된다.

제7조(정보통신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정보통신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를 심사분석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을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보안업무 추진계획 : 매년 1월 25일 까지
2. 정보통신보안업무 심사분석 : 매년 7월 31일 까지(전년도 3/4분기~해당 연도 2/4분기)

제8조(정보통신보안 지도점검)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하여 정보통신보안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방문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보안업무 심사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정보통신보안사고 처리 및 조사) ① 시장은 정보통신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 개요
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4. 조치내용 등

② 시장은 정보통신보안사고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 등 정보통신보안 전문기관과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규정에 따른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등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부서의 장에게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보안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통신보안 교육) 시장은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보안에 대한 교육계획(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포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직원대상) : 연 2회 이상
2. 외부용역업체 직원 : 연 1회 이상

제11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① 시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등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2.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3. IP 할당현황
 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
 2.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3. 기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제13조(정보통신보안 활동) 시장은 각 부서의 정보통신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모의 사이버테러 훈련(모의해킹 메일 훈련 등)
2. 정보통신보안대책 수립·이행에 대한 점검
3. 사이버침해 사고발생 시 대응·복구 현황 점검
4. 그 밖에 정보통신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보통신실 및 정보시스템 보안

제14조(정보통신실 보안관리) 정보통신실을 운용하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지 및 방재 대책
2. 단일 출입문을 정하고 잠금장치 설치
3. 장비별 관리책임자 지정 운용
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및 정보자산의 반출·입 통제
5.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등 전력관리 대책
6.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 등

제15조(정보시스템 보안관리) ① 시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별로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이 비인가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의 설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1. P2P, 웹하드 등 파일 공유 프로그램
2. 상용 메신저 프로그램 등

③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따라 그 하드웨어 목록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접근통제 장치가 마련된 공간에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

- ④ 시스템관리자는 소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신규로 설치되는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조치
 2. 시스템의 운영체제 등 최신 패치 실행
 3. 설치·운영 중인 시스템의 수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⑤ 외부자가 전산실에 출입하여 서버와 관련된 작업을 할 경우 시스템관리자가 입회·감독해야 한다.

- 제16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관리) ① 시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각종 공개서버는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서 운영하고 보안적합성이 검증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개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제한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공개서버에 비공개 자료 및 개인정보가 유·노출, 위·변조 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공개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는 개발 완료 후 사용이 제한되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공개서버의 보안취약점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위·변조,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7조(사용자계정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계정(ID)의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 시스템 불법접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관리하여야 한다.
1. 신규 사용자계정 생성 시 신청서 작성,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
 2.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사용자계정을 해지해야할 때에는 신속히 삭제
 3.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사용자계정을 공동으로 사용 금지
 4. 외부 사용자의 계정부여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 허용
 5.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계정은 사용 금지
 6.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정을 점검하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삭제
 7. 계정을 주기적(사용자계정 6개월, 관리자계정 3개월)으로 점검하여 접근권한을 재검토하고 권한 남용을 감시
- ② 정보시스템의 계정은 사용목적 및 권한에 따라 관리자계정과 사용자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관리자계정은 관리자로 지정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에게는 대여

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회수 후 즉시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 ④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별로 계정발급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자계정 관리대장에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8조(비밀번호 관리) ① 비밀이나 중요자료에는 반드시 자료별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사전에 등록된 단어 또는 추측하기 쉬운 단어는 사용하지 말 것
4. 이미 사용된 또는 직전에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5. 패스워드의 전달 시 팩스,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말 것
6. 패스워드의 입력 횟수는 최대 5회로 제한
7.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8.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금지

- ③ 서버에 등록된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9조(악성코드 방지대책) ① 시장은 워·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개인PC에서 작성하는 문서·데이터베이스 작성기 등 응용프로그램을 보안패치하고 백신은 최신상태로 업데이트·상시 감시상태로 설정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넷 등 상용망으로 자료 입수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되 최신 백신으로 진단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메신저·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인터넷 연동구간의 침입 차단시스템 등에서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보안설정 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Unsigned) Active-X 등이 PC 내에 불법 다운로드 되고 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시스템관리자 또는 PC 등의 사용자는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파일 임의삭제 등 감염 시스템 사용을 중

지하고 전산망과의 접속을 분리한다.

2. 악성코드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③ 시장은 악성코드가 신종이거나 감염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전라북도지사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성 검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단계에서 전라북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정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생략하거나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1. 유·무선 네트워크를 신·증설하거나 서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부 정보통신망을 외부망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3. 국정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정성을 검증한 암호장비·보안자재·암호논리·암호모듈·정보통신보안시스템을 도입·운용하고자 할 경우

4. 원격근무 지원 등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5. 외부기관 및 업체의 보안감리 또는 보안컨설팅(보안취약점 분석·평가를 포함한다)을 받거나 정보처리·보안관제 등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6. 그 밖에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운용환경 변화로 인하여 별도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제21조(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① 사용자 및 시스템관리자는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불용처리(교체·반납·양여·폐기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삭제는 해당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저장매체별, 자료별 차별화된 삭제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당해 기관 내에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처리용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저장자료의 삭제를 외부업체에 의뢰할 경우 작업 장소에 입회하여 삭제 절차 및 방법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저장장치의 자성을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시키는 전용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의 보안 적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 ⑥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외부 반출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불용처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저장매체의 고장수리·저장자료 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복구 참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징구, 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당해 시스템의 사용기관·부서·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자 정보통신보안

제22조(PC보안관리) ① 시장은 단말기를 포함한 PC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인가자가 PC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자정보를 유출하거나, 위·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장비별·사용자별 비밀번호 사용
2. 백신 및 PC용 침입차단시스템 등 운용
3. P2P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③ 시장은 PC를 교체·반납·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PC에 적용되는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의 취급관리는 제17조(사용자계정 관리)와 제18조(비밀번호 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자PC 보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PC부팅 시 패스워드 설정
2. 컴퓨터명은 사용자 실명으로 설정하고 작업그룹명은 과명으로 설정
3. 최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화면보호기 설정
4. IP주소 임의변경 금지
5. PC에 대한 최신 보안업데이트,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바이러스검사 실시

제23조(소프트웨어의 설치 제한) ① 각 부서의 소프트웨어는 업무상 인가된 프로그램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정보시스템을 침해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하거나 시스템 운영상 설치된 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하드웨어 설치 제한) ① 기밀정보를 보관 또는 처리하고 있는 PC단말기의 모니터는 창문 옆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② PC내·외부에 설치 또는 부착된 하드웨어를 임의로 변경·제거하거나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제25조(인터넷PC 사용제한) ① 인터넷PC에서 내부정보유출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1. 웹메일을 이용한 메일 발송 시 메일제목, 본문내용, 첨부파일내용에 사전 정의된 키워드(기관 중요정보 키워드 및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2. 웹메일(상용이메일) 사용 시 대용량 첨부기능으로 메일을 송신할 경우
3. 침입차단시스템을 우회하여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비스 연결할 경우
4. 웹하드 등에 파일 업로드를 시도하는 경우
5. 상용 메신저 S/W를 설치하여 연결을 시도할 경우
6. 비업무용사이트(인터넷파일공유 및 음악 사이트 등)에 접속할 경우
7. 그 밖에 정보통신보안을 위하여 서비스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업무·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PC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저장·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통하여 외부 공개가 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편집을 허용할 수 있다.

제26조(업무PC 사용제한) 업무PC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물리적 우회접속 시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시장은 사용자 PC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2.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3. 보안USB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4. PC보안 및 접근통제 소프트웨어 등

제28조(방문자 PC의 사용제한) 방문자 휴대용컴퓨터(일반 PC포함)는 각 부서 내부 업무망 접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사전에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한하여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제29조(PC 반·출입 제한) 내부 업무용PC는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하며 외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컴퓨터에 한하여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하에 반출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자 패스워드 관리) ① 사용자PC의 패스워드 관리는 제18조 “비밀번호관

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사용자는 PC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패스워드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타인에게 고의로 패스워드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PC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패스워드가 노출되었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패스워드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31조(바이러스 감염 시 조치사항) 사용자는 사용자PC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 될 경우 즉시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바이러스 감염사실을 신속하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휴대용저장매체 관리) ①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을 말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저장매체의 등록, 파기, 재사용, 반출·입, 불용처리 현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휴대용저장매체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의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 보안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33조(전자우편 보안대책) ① 시장은 웹·바이러스 등 악성코드로부터 사용자 PC 등 전자우편 시스템 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바이러스 윌, 해킹메일 차단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수신을 금지하며 기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 중요 업무자료는 열람 등 활용 후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을 금지하고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메일 수신시에는 즉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정보화용역사업 관리

제34조(용역사업 계획단계) ① 시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입찰공고·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기타 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시장은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참가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을 명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평가요소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 계획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용역사업 입찰·계약단계) ① 시장은 입찰 공고 시 누출금지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등 보안준수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업체가 제시한 보안관리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외부용역을 추진할 경우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 계약서에 참가직원의 보안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명시
2.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교체 금지
3. 정보통신망도·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4. 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5.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 금지
6.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반입 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7. 기타, 시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국정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⑤ 시장은 용역업체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용역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서에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하여 사업관리담당과 보안관리담당을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가 작아 분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관리담당이 보안관리를 병행할 수 있다.

제36조(용역사업 수행단계) ① 시장은 참여인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의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징구

2. 용역업체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3.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4. 비밀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에게 보안측정을 요청
- ② 시장은 용역업체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용역사업수행 중에 생산된 산출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의 보안담당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수발신
 4. 발주기관의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③ 시장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과 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시건장치가 구비되고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가능한 사무실 사용

2. 용역업체의 사무실과 인원·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
3.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4. 인가받지 않은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

④ 시장은 용역업체가 이용하는 전산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2.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분서 접근 금지하고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3.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 보안 담당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4. 용역사업 보안관리담당은 서버 및 장비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 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5.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6.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차단

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용역업체보안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37조(용역사업 종료단계) ① 시장은 최종 용역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하여야한다.

- ② 시장은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장비·문서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자료를 확인하여 전량 회수해야 하며,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시켜야 한다.
- ③ 시장은 사업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2항의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에 용역업체가 용역 산출물의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38조(용역사업 보안관리실태 점검) 시장은 정보화용역사업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안대책에 대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통신망 관리

- 제39조 (상용망 등 외부망 연동) ① 시장은 내부 정보통신망을 외부 정보통신망에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안관리 책임한계 설정, 전자정보의 제공범위 및 이용자 접근제한 등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상용망(인터넷 포함)이나 다른 기관과 정보통신망을 연계하기 위한 보안관리 연결지점을 운용할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무단침입(불법접속)이나 악성코드 및 사이버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검증한 보안시스템의 설치·운용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내부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설주소체계(NAT : Network Address Translation)를 사용한다.
 - ④ 시장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사이트 접속이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금지하여야 하며, 개인용 장비에서 음란·도박·게임 등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접근에 대한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0조 (원격근무 보안관리) ① 시장은 재택·파견·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전라북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원격근무 사유(재택, 파견, 이동근무, 출장, 전산망 유지보수 등) 확인
2. 원격근무지원시스템의 사용기록을 보관하고 사용자, 사용자계정, 접속 주소와 시간 및 특이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3. 원격근무 완료 후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의 신속한 회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있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원격접속서비스(GVPN)의 이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활용 가능한 기관의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41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① 시장은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 특정 IP·MAC 주소에서의 접속은 허용
2.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
3. 최초 설치 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패치 실시
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5. 접근통제목록(ACL) 적용 및 초기설정 비밀번호 변경으로 비인가자의 네트워크 장비 무단접근 통제

② 시장은 네트워크장비의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비인가자의 침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2조(무선랜 보안관리) ① 시장은 무선랜(와이파이 등)을 이용하여 업무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전)에서 전라북도지사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이름(SSID, Service Set Identifier) 브로드캐스팅 중지
 2. 추측이 어려운 복잡한 SSID 사용
 3.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한 암호논리 사용)
 4. MAC 주소 및 IP 필터링 설정, DHCP 사용 금지
 5. RADIUS(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 인증 사용
 6. 그 밖에 무선단말기·중계기(AP) 등 무선랜 구성요소별 분실·탈취·훼손·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
- ③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 제43조(무선인터넷 보안관리)** ① 시장은 무선인터넷(WiBro, HSDPA 등)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전라북도지사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사 전역에 무선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민원실 등 특별히 무선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구역에 한해 기관장 책임하에 운용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업무용PC에서 무선인터넷 접속장치(USB형 등)가 작동되지 않도록 관련 프로그램 설치 금지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개인 휴대폰을 제외한 무선인터넷 단말기의 사무실 무단 반입·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제7장 사이버공격 대응 및 조치

- 제44조(예방활동)** 시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시 예방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연락체계를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초동조치) 시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이버공격을 인지할 경우 그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로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신망과 분리하는 등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및 접근시도
2. 정보자산의 유출(H/W, S/W, DATA 등)
3. 비인가자에 의한 중요 정보의 위·변조 및 삭제에 관한 사항
4. 악성 프로그램(바이러스, 백도어 등) 유포
5. 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거부공격(DOS 공격 등) 발생
6. 네트워크 장비, 서버 및 PC 등에 대한 해킹
7. 그 밖에 정보통신보안 사고에 해당하는 사항

제46조(사고통보 및 복구) ① 시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련 부서장에게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장 보안자재(암호·음어·약호자재)

제47조(등록 및 관리) ① 시장은 자체 제작한 암호·음어 및 약호자재(이하 “보안자재”라 한다.)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보안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용 보안시스템 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기록

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 ③ 보안자재는 사용완료(이하 “반납용”이라 한다)·현용·미래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암호자재는 암호실 내 금고에 보관하고 음어·약호자재는 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일과 후에는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⑤ 보안자재 보관함에는 보안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암호취급자 및 음어취급자는 보안자재의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용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에 월1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8조(준용 또는 위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규정에 따른다.

1.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2. 『국가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3. 『보안업무규정』
4.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5.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6.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7. 『전라북도 보안업무규정』
8.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 보안관리 지침』
9. 전라북도 용역업체보안관리 매뉴얼
10. 그 밖에 정보통신보안 관계 법령 및 규정·가이드·매뉴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군산시 행정전산망안전관리 규정」을 폐지한다.

[별표 1]

정보통신보안점검 체크리스트

1. 정보통신보안 기본활동

순번	세부 점검사항	비고
1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통신보안업무 내규를 수립하고 있는가?	
2	매년 정보통신보안업무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심사분석 하는가?	
3	정보통신보안업무 전담 조직 및 직원(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가?	
4	소속·산하기관 대상 정보통신보안 감사·점검·지도방문을 실시하는가?	
5	소속·산하기관 대상 정보통신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6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내실 있게 수행하는가?	
7	정보통신보안 위규·사고,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조치절차가 있는가?	
8	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대한 심사 등 인적보안 절차·방법을 강구중인가?	
9	보직변경 등 인사이동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신속하게 조정하는가?	
10	서버·PC 등 정보시스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가?	
11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반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는가?	
12	업무자료를 상용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 있지 않는가?	
13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 충분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는가?	
14	용역업체 직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	
15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시 자체 보안성검토를 시행하고 있는가?	
16	중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국정원에 보안성검토를 의뢰하는가?	
17	정보보호시스템(암호모듈 포함) 도입시 보안적합성 검증절차를 준수하는가?	

2. PC 및 서버 보안관리

순번	세부 점검사항	비고
1	PC·서버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을 최신 보안업데이트 하였는가?	
2	백신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고 실시간 감시기능이 설정되어 있는가?	
3	업무용 PC에 비밀이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가?	
4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업무에 무관한 서비스가 허용되거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는가?	
5	비인가자 접근방지를 위해 PC 부팅 비밀번호를 설정했는가?	
6	서버 내 저장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권한설정이 되어 있는가?	
7	공개서버가 DMZ 구간에 위치하는 등 정보통신망 구성측면에서 PC 및 서버 등의 위치가 적절한가?	
8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 이동형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등)를 반입·휴대하고 있는가?	
9	전자우편 비밀번호 설정 시 특수문자 포함,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는가?	
10	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기록을 유지 관리하는가?	
11	PC·서버에 비인가 USB 등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연결 시 작동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되어 있는가?	
12	PC·노트북 등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의 고장 시 저장된 자료의 완전 삭제를 확인하고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는가?	
13	중요정보가 저장된 매체 불용처리 시 전용 소자장치로 삭제하거나 파쇄·용해 등 물리적으로 완전 파기하고 있는가?	

3. 네트워크 보안관리

순번	세부 점검사항	비고
1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도(IP 포함)를 최신으로 유지하면서 대외비 이상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가?	
2	업무자료를 소통하기 위한 내부망은 인터넷과 분리 운영하는가?	
3	업무망·인터넷간 자료공유 방안이 적정한가?	
4	업무자료를 소통하기 위한 내부망 구축 시 사설주소체계(NAT)를 적용하는가?	
5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가?	
6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공유를 제한하고 있는가?	
7	스위치·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는 비인가자가 접속 못하도록 IP·MAC 통제 등 보안설정하고 불필요한 서비스포트를 제거하는가?	
8	와이프로, 무선랜 등 허가받지 않은 인터넷 접속경로가 존재하는가?	
9	첨단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내부 업무자료 유출방지 대책이 충분한가?	
10	시스템 최초 설치시 등록된 관리자계정(회사명 등)·패스워드를 변경하였는가?	
11	장비 신규 도입, IP할당내역 등 전산망 구성 변동 시 관련사항을 기록하는가?	
12	중요업무 처리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는가?	
13	무선네트워크 구축 시 사전에 국정원의 보안성검토를 받았는가?	
14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5	불가피한 사정상 무선중계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WPA2이상 보안설정을 하였는가?	
16	직원의 재택·파견·이동근무 등 원격근무 시 보안관리 절차가 충분한가?	

4. 보안관제 등 해킹 대응활동

순번	세부 점검사항	비고
1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관제센터를 운영하거나 同 업무를 他기관에 위탁하였는가?	
2	보안관제센터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는가?	
3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는가?	
4	해킹사고 조사결과, 보안위규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5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있는가?	
6	보안관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대책이 있는가?	
7	자체 DDoS공격 대응매뉴얼을 구비하였는가?	
8	자체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9	DDoS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에 즉시 연락하는가?	
10	시스템 장애 시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가 구비되어 있는가?	
11	보안관제시스템에 대한 물리적인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12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내역 등 관련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저장하고 있는가?	
13	해킹메일 대응방안 등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보안교육을 수행하는가?	
14	보안취약점 발표 시, 대상기관이나 담당직원에게 즉시 배포하는가?	
15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과 사이버위협정보, 탐지기술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가?	
16	사이버공격 발생시 소속·산하기관에 전파할 수 있는 체계가 구비되었는가?	

[별표 2]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 자료별 삭제방법

저장자료 저장매체	공개자료	민감자료 (개인정보 등)	비밀자료 (대외비 포함)
플로피디스크	㉠	㉠	㉠
광디스크 (CD · DVD 등)	㉠	㉠	㉠
자기 테이프	㉠ · ㉡중 택일	㉠ · ㉡중 택일	㉠
반도체메모리 (EEPROM 등)	㉠ · ㉡중 택일	㉠ · ㉡중 택일	㉠ · ㉡중 택일
	완전포맷이 되지 않는 저장매체는 ㉠ 방법 사용		
하드디스크	㉡	㉠ · ㉡ · ㉢중 택일	㉠ · ㉡중 택일

- ㉠ : 완전파괴(소각 · 파쇄 · 용해), ㉡ : 전용 消磁장비 이용 저장자료 삭제
 ㉢ : 완전포맷 3회 수행, ㉣ : 완전포맷 1회 수행

[별지 제1호 서식]

정보통신보안 세부업무 추진계획

1. 활동 목표

2. 기본방침

3. 세부 추진계획

분야별	사업명	세부 추진계획	주관·관련부서	비 고

※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대상여부 표기

4. 전년도 보안감사·지도방문 시 도출내용과 조치내역

도 출 내 용	조 치 내 역	담 당 부 서

※ 형식위주의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소속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정보통신보안업무 심사분석

- 1. 총 평
- 2. 주요성과 및 추진사항
- 3. 세부 사업별 실적분석

추진계획	추진실적	문제점	개선대책

※ 추진실적은 목표량과 대비하여 성과달성도를 계량화

4. 부진(미진)사업

부진사업	원인 및 이유	익년도 추진계획

5. 애로 및 건의사항

6. 첨부(정보통신망 및 검증필 정보보호시스템 운용현황 등)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사용자계정 관리대장

연번	소속	성명	시스템명	계정	접근권한	처리내용 (등록, 수정, 삭제)	처리일자	확인

[별지 제7호 서식]

비밀번호 관리대장

연번	소속	성명	업무명	종류	기종능	계정	비밀번호	부여일자	해제일자

- 업무명에는 시스템관리, 전자결재 등 구분
- 종류에는 서버종류, 단말기, 파일 등으로 구분

[별지 제8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라벨

↑
2.5cm
↓

일반/비밀용		(인)	
관리번호 표기			
정		부	

← 5cm →

<디스켓, 이동형 HDD 서식>

↑
2cm
↓

일반/비밀용		(인)	
관리번호 표기			

← 3cm →

<USB-CD 등 서식>

- 同 서식을 만들어 보조기억매체 중앙의 적절한 위치에 부착
- 첫 번째 줄에는 일반/비밀용은 정보통신 보안담당관의 직인을 날인하고 공인인증서용은 관리책임자의 직인을 날인
- 두 번째 줄에는 보조기억매체 관리번호 표기
- 세 번째 줄의 '정'란에 관리책임자, '부'란에 취급자 표기(USB메모리 및 CD의 경우 생략 가능)
- 보조기억매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서식, 글자 크기 조정 가능

[보조기억매체 라벨 사용 예]

일반용		(인)	
총무과-일반-01			
정	이순신	부	홍길동

비밀용		(인)	
총무과-대외비-02			
정	이순신	부	홍길동

공인인증서용		(인)	
총무과-인증-03			
정	이순신	부	홍길동

일반용		(인)	
총무과-일반-01			

II급비밀용		(인)	
총무과-II급-02			

공인인증서용		(인)	
총무과-인증-03			

[별지 제9-1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일반용)

<관리책임자 : __급 ○○○○>

연번	관리번호 (S/N)	매체 형태	등록 일자	취급자 (성명)	불용처리 일자	불용처리방법 (재사용 용도)	비고 (사유)

[별지 제9-2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비밀용)

<관리책임자 : __급 ○○○○>

연번	관리번호 (S/N)	등급	매체 형태	등록 일자	취급자 (성명)	불용처리 일자	불용처리방법 (재사용 용도)	비고 (사유)

[별지 제10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

<관리책임자 : __급 ○○○>

점검 일시	현 보유수량				이상 유무	점 검 관		비 고 (서명)
	Ⅱ 급	Ⅲ 급	대외비	일반		성명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관리책임자 : __급 ○○○>

장비명	관리번호 (S/N)	사용자 (직급)	용도	반출입 일시 (입/출 구분)	비 고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아래와 같이 보조기억매체(종 점) 불용처리 및 휴대용 저장매체(종 점) 재
사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

연번	관리번호 (S/N)	매체형태	사 유	불용처리 방법	재사용

확인일자 : 년 월 일

요청자 : 소속·직책

○급 성명 : (인)

확인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급 성명 : (인)

[별지 제13호 서식]

국제통신 사용기록부

사용일자	발신자	수신자	통화국명	내용요약	확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별지 제14호 서식]

IP주소 관리대장

부서	사용자명	IP Address	MAC Address	gateway	subnet mask

[별지 제15호 서식]

암호취급자 및 음어취급자 인감등록서

1. 기관명 :

2. 변동 및 등록일자 : 년 월 일

가. 정 책임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급 및 성명			
직 책			
생 년 월 일			
비밀취급등록			

나. 부 책임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급 및 성명			
직 책			
생 년 월 일			
비밀취급등록			

다. 실 무 자

인 적 사 항		인 감	서 명
직급 및 성명			
직 책			
생 년 월 일			
비밀취급등록			

[별지 제16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보안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보안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7호 서식]

국가용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

<암호장비용>

장비명	배 부(수량)					회 수(반납)				변동사항			비고	
	일시	수량	등록번호	대상기관	증빙번호	일시	수량	등록번호	증빙번호	일시	근거	수량		확인

<암호·음어·약호자재용>

자재명칭	제 작				배 부				회 수			변 동 사 항			비고
	일시	수량	등록번호	발행처	일시	수량	등록번호	대상기관	일시	수량	등록번호	일시	근거	수량	

[별지 제18호 서식]

국가용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

<암호장비용>

점검일시	장비명칭	점 검 사 항				점 검 관	
		납봉	암호화	회선	동작	성명	서명

※ 점검요령

- 납봉상태 : 암호장비 외장 불법개봉 여부 점검
- 암호화상태 : 암호와 또는 비화상태 점검
- 회선상태 : 암호장비와 정보통신장비간 접속코드 등 연결상태 점검
- 동작상태 : 암호장비의 성능저하 고장여부 등 정상동작 여부 점검

<암호·음어·약호자재용>

점검일시	자재명칭	부 수	보관상태	점 검 관		비고
				성 명	서 명	

※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는 필요에 따라 암호장비, 암호·음어·약호자재 등 용도별로 분류 또는 통합권으로 사용

[별지 제20호 서식]

지편자재 사용기록부

자재 번호	관리 번호	년월일	전문액표			난수사용				소 자 년월일	소자자	비고
			번호	송수 구분	조수	부터		까지				
						쪽	행	쪽	행			

<작성요령>

○ 전문액표

- 번 호 : 암호전문 일련번호
- 송수구분 : 수발신으로 구분
- 조 수 : 암호전문 조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14-1호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입법예고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장

2014년 11월 17일

1. 자치 법규명 :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군산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상품화, 농식품 창업, 로컬푸드 활성화를 지원하는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목적, 위치,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3조)
- 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6조)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무관리 및 기타 사항(안 제17~1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73-922 / 전북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전화: 063-454-5252, FAX: 063-454-521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방문 ·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담당자 이선우 (전화 : 063-454-52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1부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 가공 창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
2. 위 치 :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인등”이란 군산시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2호 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사용자”라 함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가공시설”이라 함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농업인등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군산시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이행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농업인들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대부
 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산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①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한다.

1. 농업인들이 군산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 1항 제6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사용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산정된 사용료는 「군산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한다.

③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9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① 지역 농산물의 가공기술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 ② 지역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경우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사용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산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사용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시설의 대부)

① 시장은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유통·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들이 1년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서류등의 제출)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품의 반출 제한) 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제품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과정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 미납
4.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
5.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①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공정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③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 보상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연락처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신청사항	사용자명	외 명		
	사용장비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제품명(품목)	주원료명(kg)	가공유형	비 고 (판매용, 시험연구용)

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고시 제2014-119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4. 11. 11

군산시장 (인)

주 소	전북 익산시 변영로 2025-142(목천동)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하 천 명 칭	탑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점 용 목 적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637-57외 2필지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양수장 설치(기존시설물 개량)		
점 용 면 적	136m ²		
최 초 허 가 일	2014년 11월 11일		
점 용 기 간	2014년 11월 20일로부터 2019년 11월 19일까지(5년)		

군산시 고시 제2014 - 120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11월 17일

1. 사업명칭 : 2014년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목 적 :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면지역 균형발전 도모
3. 사업내용

연번	위 치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사업비 (백만원)	비고
1	옥서면 선연리	옥서면 장원마을 도로확포장공사	L=138m, B=6m	2014 ~ 2015	군산시	238	
2	회현면 대정리	옥산면 금성마을 도로확포장공사	L=193m, B=6m	2014 ~ 2015	군산시	138	
3	옥산면 쌍봉리	옥산면 쌍봉리 도로확포장공사	L=380m, B=6m	2014 ~ 2015	군산시	632	

4. 사업효과 :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생활환경개선
5. 관계도서는 군산시 건설과에 비치하여 열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개발계(☎454-3602)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4 - 121호

고 시 문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11월 일

- 1. 사업의 목적 : 전 (고구마, 채소 등 밭작물 재배)
- 2. 사업 위치 :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467-4
- 3. 지목 및 지적 : 임야 30,542m²
- 4. 사업시행면적 : 4,950m²
- 5. 사업비소요액 : 27,420,000원
- 6. 사업 기간 : 승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7. 사업 효과 : 고구마, 채소 등 밭작물 재배하여 향후 3~5년차부터
소득증대
- 8. 사업시행자 : 김해김씨도사공파종중


※ 기타 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군산시 건설과 농촌발계 (☎454-3602)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4-122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1. 17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19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1건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4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4-1630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군산시 해망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4. 11. 5.

군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해망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3. 사업시행지 : 군산시 해망동 998-1번지 일원
4. 수용재결 대상 : 아래 붙임 참조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4. 11. 5. ~ 2014. 11. 20.(15일간)
6. 열람장소 : 군산시청 게시판
7. 의견서 제출처 : 군산시 안전총괄과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063 - 454 - 3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수용재결 대상

○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동(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해망		1001-5	대	26	13 (26×1/2)	군산시 대학로 116-9	신우일	없		음	
"		998-115	대	126	126	군산시 산북동 3549-1 삼진빌라 가동106호	변중철	없		음	
"		998-118	대	135	67.5 (135×1/2)	군산시의료원로 136,104동1403호(나운동, 대우@)	신인식	없		음	
"		998-118	대	135	67.5 (135×1/2)	군산시 수송동로 20,206동 502호(한라비발디@)	차정원	없		음	
"		998-132	대	58	5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323번지 양우@101동1805호	이진덕	없		음	
"		998-177	대	62	10.3 (62×1/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학로326,1동1501호 (원월동,전원파크)	임영해	없		음	
"		998-204	대	50	50	군산시 개정면 아산리 19	이정희	군산시 해망동 999-88, 해망동 999-88, 지점) 군산시 조촌동 835-2),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전북지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67 군산시 나운안1길 24,404동 203호(나운동,나운4차현대@))	군산시수협(해망지점)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홍성일		
"		998-237	대	69	69	군산시 해망2길 29-2	최준철	없		음	
"		998-246	대	75	75	충남공주시계룡면하대리 산31번지	김종선	없		음	
"		998-300	대	24	24	군산시 석치1길 10-3 (문화동)	강정자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계인 예금 보험공사	
"		998-310	대	51	5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115-4 현대그린@ 102동 404호	황윤주	없		음	
"		999-37	대	42	42	군산시 수송동로 20,206동 502호(한라비발디@)	신봉경	없		음	
"		998-59	대	21	21	군산시설립안2길98(소룡 동,진성연립나동201호)	조성욱	없		음	
"		999-189	대	9	9	군산시 해망로 310-1	이만우	없		음	
"		998-21	대	74	74	군산시 해망로 310-1	이만우	군산시 조촌동 774		군산시 농업협 동조합(삼학지 점)	
합계		14필지		811	757		15명		7명		

○ 물건(지장물)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수량 및 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해망		998-132	주택	블록+스레트	33.3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323번지 양우@101동1805호	이진덕	없		음	
			주택	블록+슬라브	2.8						
			마당	콘크리트	4.7						
			대문	나무	1식						
			정화조		1식						
			화단	석축 (H=0.7m)	3.0						
"		998-177	주택	블록+스레트	57.9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학로326,1동1501호 (완월동,전원파크)	임갑출	없		음	지분 6분의1
			마당	콘크리트	13.71						
			대문	철재 (1.6*2.0)	1식						
			문주	콘크리트 (0.4*0.3*2.4)	2ea						
			계단	콘크리트 (0.3*0.15*0.6)	5ea						
			정화조		1식						
"		998-177	주택	블록+스레트	57.9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학로326,1동1501호 (완월동,전원파크)	임영해	없		음	지분 6분의1
			마당	콘크리트	13.71						
			대문	철재 (1.6*2.0)	1식						
			문주	콘크리트 (0.4*0.3*2.4)	2ea						
			계단	콘크리트 (0.3*0.15*0.6)	5ea						
			정화조		1식						
"		998-177	주택	블록+스레트	57.9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학로326,1동1501호 (완월동,전원파크)	임성옥	없		음	지분 6분의1
			마당	콘크리트	13.71						
			대문	철재 (1.6*2.0)	1식						
			문주	콘크리트 (0.4*0.3*2.4)	2ea						
			계단	콘크리트 (0.3*0.15*0.6)	5ea						
			정화조		1식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수량 및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해망		998-177	주택	블록+스레트	57.91	군산시 소룡동 1392-20, 대성주택 나동 206호	임정수	없		음	지분 6분의 1	
			마당	콘크리트	13.71							
			대문	철재 (1.6*2.0)	1식							
			문주	콘크리트 (0.4*0.3*2.4)	2ea							
			계단	콘크리트 (0.3*0.15*0.6)	5ea							
			정화조		1식							
"		998-177	주택	블록+스레트	57.9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학로326,1동1501호 (완월동,전원파크)	임성희	없		음	지분 6분의 1	
			마당	콘크리트	13.71							
			대문	철재 (1.6*2.0)	1식							
			문주	콘크리트 (0.4*0.3*2.4)	2ea							
			계단	콘크리트 (0.3*0.15*0.6)	5ea							
			정화조		1식							
"		998-177	주택	블록+스레트	57.9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10길 43, 한신아파트 101/1004호	임영광	없		음	지분 6분의 1	
			마당	콘크리트	13.71							
			대문	철재 (1.6*2.0)	1식							
			문주	콘크리트 (0.4*0.3*2.4)	2ea							
			계단	콘크리트 (0.3*0.15*0.6)	5ea							
			정화조		1식							
"		998-237	주택	블록+스레트	47.11	군산시 해망2길 29-2	최준철	없		음		
			목욕탕 및 창고	조적	1식							
"		998-21	주택1	블록+대리석	83.7	군산시 해망로 310-1	이만우	군산시 조촌동 774			군산시 농업협동조합 (삼학지점)	
			주택2	블록	83.7							
			주택3	블록+슬라브	48.63							
			보일러실	조립식	13.5							
			출입문	나무	1식							
			정화조		1식							
			계단	콘크리트	1식							
합계		4동				9명		1명				

분할조서 의결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4-1645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 및 청산을 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4. 11. 7. ~ 2014. 11. 20.
2. 공고 내용 :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 군· 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분할 후 필지 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군산		문화	746	대	171	2	이정*	1962.4.5	군산시 문화동 ****	박옥*
군산		금암	1	대	869.4	2	김현*	1938.3.20	군산시 금암동 ****	김상*
군산	개정	아동	361-4	대	354	2	김진*	1957.1.18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	전정*,김맹*
군산	옥도	개야도	13-6	대	548	2	윤영*	1953.5.17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2길 ****	박인*
군산	옥도	개야도	13-7	잡종 지	517	2	윤영*	1953.5.17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2길 ****	박인*
					이하	여백				

2014 년 11월 7일

군 산 시



분할개시결정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4-1646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보가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4. 11. 7. ~ 2014. 11. 27.
2. 공고 내용 :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군산		월명	10-17	대	13	진한*	1928.5.11	군산시 월명동 ****	
군산		월명	27-6	대	50	이병*	1948.6.1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 55, ****	
군산		월명	14-17	대	18	박지*	1966.10.7	군산시 상신7길 15 ****	정구*
군산		월명	20-17	대	10	이해*	1942.1.1	군산시 월명동 ****	서일*
군산		개정	447-1	대	449	조운*	1938.8.26	군산시 쌍천로 ****	김도*
군산		산북	2567-1	대	446	신동*	1923.1.23	군산시 산북동 ****	유상*
군산	서수	서수	1092-1 3	대	995	고형*	1928.11.1	군산시 서수면 ****	혀영*
군산	성산	도암	209-2	대	202	최도*	1977.7.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도일로 60-34, ****	박정*, 김안*
군산	나포	옥곤	405-13	대	167	이승*	1962.3.10	군산시 나포면 십자들로 ****	김상*
군산	옥도	관리도	27	대	367	고대*	1964.4.6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	최성*

군 산 시 장



2014년 11월 7일

군산시 공고 제2014-1647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운동시설-실내배드민턴장)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525호(1967.7.2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군산시 고시 제2011-69(2011.09.26)로 공원조성 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새들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사업(공원: 운동시설-실내배드민턴장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88조에 의거 군산시 제 2011-73호(2011. 11.04)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던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산시 체육진흥과 (454-5594)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일
군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군산시 수송동 710- 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운동시설-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내용

구분	시 설 명	시 설 결 정	실시계획(변경)	비 고 (내 용)
		면적(m ²)	면적(m ²)	
공간사업	새들공원 (근린공원6)	139,157	당초 4,591	녹지 418m ² 포함 토지보상 및 운동시설조성
			변경 5,009	

4.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체육진흥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2011. 9 ~ '2012. 12. 31.

변경 '2011. 9 ~ '2015. 0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변경)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실음생략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9. 열람장소 : 군산시청 체육진흥과

10.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제외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수송동	주소	이름	주소	관리내용	
1	변경 없음	수송동	710-1	전	217	217		군산시					
2	변경 없음	수송동	710-2	전	105	105		군산시					
3	변경 없음	수송동	710-3	전	225	225		군산시					
4	변경 없음	수송동	711-2	전	861	861		군산시					
5	변경 없음	수송동	703	전	698	698		군산시					
6	변경 없음	수송동	701-8	전	501	501		군산시					
7	변경 없음	수송동	701-9	전	445	445		군산시					
8	변경 없음	수송동	702-12	전	232	232		군산시					
9	변경 없음	수송동	711-1	대	64	64		군산시					
10	변경 없음	수송동	701-1	임	694	694		군산시					
11	변경 없음	수송동	702-13	임	358	358		군산시					
12	변경 없음	수송동	702-14	임	127	127		군산시					
13	변경	수송동	702-17	임	81	81		두병희	군산시 수송동 703				
14	변경	수송동	702-18	임	337	337		두병희	군산시 수송동 703				
15	변경 없음	수송동	788	공원	1184.2	64		군산시					
계			15필지		6,129.2	5,009							

군산시 공고 제2014 - 1651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시행계획(안) 공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 규정에 따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시행계획(안)』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

군 산 시 장

1. 수립목적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역이 처해있는 복지환경과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 지역 스스로가 실시해야 할 사업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결정

2. 대상지역 및 적용기간

- 대상지역 : 군산시
- 적용기간 : 2015년 1월 ~ 2018년 12월(4년)

3. 계획의 성격

-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주민복지와 관련된 유관분야 등 종합계획
-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고유사업 개발 및 이를 위한 실천계획

4. 계획의 내용 및 분야

- 내용
 - 4년 단위 중기계획으로서 군산시 핵심사업을 단위로 한 종합계획으로서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 전략을 제시
- 분야

- 저소득, 노인, 여성(다문화), 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5. 공고기간

- 2014. 11. 10 ~ 2014. 11. 29 (20일간)

6. 기타문의

-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 TEL : 063-454-3063 FAX : 063-454-3059

※ 제3기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 시행계획(안)-따로붙임

군산시 공고 제2014-1659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11월 14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내초동 163-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신축공사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면적.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5,724	5,707	1,116	1,116	전북고261 (00.6.27)

4.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리동 536-3

나. 사업시행자의 성 명 : (유)인동지알시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실시계획인가일(2013. 10. 14) ~ 2014. 11. 3.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